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11회 임시회>

2012. 9. 7.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성 모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8월 3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
3. 개정이유

○ 다사읍 죽곡1리에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544세대,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4단지」에 각각 597세대, 304세대가 준공 및 입주하였고, 다사읍 매곡17리에 「죽곡청아람푸르지오 1단지」 214세대가 준공 및 입주함. 이에 따라, 기존 마을과 신설 아파트 주민들간 화합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다사읍 죽곡1리를 죽곡1·7·8·9리로 분리함
- 나. 다사읍 매곡17리를 매곡17·18리로 분리함
- 다. 다사읍 죽곡리 이장 정수를 6명에서 9명,
매곡리 이장 정수를 17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3항에서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죽곡청아람푸르지오 1·2단지, 죽곡청아람리슈빌 3·4단지 입주로 늘어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아파트 내 각종 현안사항과 행사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주민 화합 및 효율적 행정추진에 기여하도록 리장의 정수 및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붙임 1) 조례안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 중 다사읍 죽곡리, 매곡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읍 면	법정리명	리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다사읍	죽곡리	9	죽곡1리	산55~산55-10, 산60-2, 산61, 산61-2, 산61-3, 산62-16, 1-1~577-2(129-1, 152, 373제외) 807-1~807-6, 808-1~808-6, 809-1~809-3, 810, 811-1~811-16, 812~814, 814-1~814-4, 815, 815-1, 816~820, 817-1, 821-1~821-3, 822, 822-1~822-3, 823-1~823-7, 824-1~824-7, 825-1~825-5, 826-1~826-14, 827-1~827-14, 828-1~828-7, 829, 830, 831-1, 832~850, 845-1, 851-1~851-7, 852-1~852-4, 853-1~853-8, 854-1~854-13, 855-1~855-7, 856-1~856-15, 857-1~857-8, 858-1~858-5, 859-1~859-4, 860-1~860-7, 861~869 (815, 818, 822 제외)
			죽곡2리	578-1~805
			죽곡3리	산56~산60-1(강창훼밀리아파트)
			죽곡4리	152(강창대성그린시티)
			죽곡5리	129-1(강창하이츠)
			죽곡6리	373(대실역 e-편한세상아파트)
			죽곡7리	822(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죽곡8리	818(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죽곡9리	815(죽곡청아람리슈빌 4단지)

읍 면	법정리명	리장정수	행정리명	관 할 구 역
다사읍	매곡리	18	매곡1리	489~500, 513~551, 553~692(622제외), 698~955(716-3,719-1~719-3,719-26제외), 산64-1, 산94
			매곡2리	1~488(302, 302-1, 473제외), 693~697, 1007~1519-2, 1544~1545-4
			매곡3리	302, 302-1(동서아파트)
			매곡4리	719-2(삼산아파트)
			매곡5리	719-3(한서꿈빠니아아파트)
			매곡6리	719-1(우방아파트)
			매곡7리	716-3(강창그린빌아파트)
			매곡8리	719-26(태왕드림하이츠아파트)
			매곡9리	509, 510(다사주공아파트)
			매곡10리	1543(죽곡하우젠트아너스빌아파트)
			매곡11리	1539(죽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매곡12리	1540(동화아이위시아파트)
			매곡13리	1537(대실역 청아람아파트 1단지)
			매곡14리	1538(대실역 청아람아파트 2단지)
			매곡15리	473(다사e-편한세상아파트)
			매곡16리	622(한일유엔아이아파트)
			매곡17리	1520~1536, 1541~1542, 1546~1553 (1552 제외)
			매곡18리	1552(죽곡청아람푸르지오 1단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 1. 제 출 일 : 2012년 8월 30일
-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
- 3. 개정이유

- 다사읍 죽곡1리에 「죽곡청아람푸르지요 2단지」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4단지」, 매곡17리에 「죽곡청아람푸르지요 1단지」가 준공 및 입주함에 따라 죽곡1리와 죽곡7, 8, 9리 및 매곡17리와 매곡18리의 기존 행정리와 신설되는 행정리의 반을 조정·신설하여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다사읍 죽곡7리 14개반, 죽곡8리 15개반, 죽곡9리 8개반을 신설함
- 나. 다사읍 매곡18리 6개반을 신설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죽곡리에 3개리, 매곡리에 1개리가 증설됨에 따라 증설된 리의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총 4개리에 43개 행정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별표】 중 다사읍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매곡18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죽곡7리	제1반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1동 101~2001, 102~2002)
		2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1동 103~2003, 105~2005)
		3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2동 101~2001, 102~2002)
		4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2동 103~2003, 105~1705)
		5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3동 101~1601, 102~2002)
		6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3동 103~2003, 105~1605)
		7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4동 101~2001, 102~2002)
		8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4동 103~2003, 105~2005)
		9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5동 101~1701, 102~2002)
		10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5동 103~2003, 105~2005)
		11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6동 101~2001, 102~2002)
		12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6동 103~2003, 105~2005)
		13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7동 101~1901, 102~2002)
		14	822 (죽곡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207동 103~2003, 105~1905)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죽곡8리	제1반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1동 201~2001, 102~2002)
		2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1동 103~2003, 105~2005)
		3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2동 101~2001, 102~2002)
		4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3동 101~2001, 102~2002)
		5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3동 103~2003, 105~2005)
		6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4동 101~2001, 102~2002)
		7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4동 103~2003, 205~2005)
		8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5동 101~2001, 102~2002)
		9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5동 103~2003, 105~2005)
		10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6동 101~2001, 102~2002)
		11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6동 103~2003, 105~2005)
		12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7동 101~2001, 102~2002)
		13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7동 103~2003, 105~2005)
		14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8동 201~2001, 102~2002)
		15	818 (죽곡청아람리슈빌 3단지 308동 103~2003, 105~2005)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죽곡9리	제1반	815 (죽곡청아람리슈빌 4단지 401동 101~2001, 102~2002)
		2	815 (죽곡청아람리슈빌 4단지 401동 103~2003, 105~2005)
		3	815 (죽곡청아람리슈빌 4단지 402동 201~2001, 102~2002)
		4	815 (죽곡청아람리슈빌 4단지 402동 103~2003, 105~2005)
		5	815 (죽곡청아람리슈빌 4단지 403동 101~2001, 102~2002)
		6	815 (죽곡청아람리슈빌 4단지 403동 103~2003, 205~2005)
		7	815 (죽곡청아람리슈빌 4단지 404동 101~1601, 102~1602)
		8	815 (죽곡청아람리슈빌 4단지 404동 103~1603, 105~1805)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매곡18리	제1반	1552 (죽곡청아람푸르시오 1단지 101동 201~2101, 202~2102)
		2	1552 (죽곡청아람푸르시오 1단지 101동 303~2103, 305~2105)
		3	1552 (죽곡청아람푸르시오 1단지 102동 301~2101, 302~2102)
		4	1552 (죽곡청아람푸르시오 1단지 102동 103~1903, 105~1905)
		5	1552 (죽곡청아람푸르시오 1단지 103동 101~1601, 102~1602)
		6	1552 (죽곡청아람푸르시오 1단지 103동 103~1403, 205~14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8월 3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
3.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례제정 권고 및 우리군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 및 달성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를 적용함
-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
-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함.
- 라.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심의·조정 할 수 있는 후생복지제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을 시달하여 운영기준을 자치법규로 제정·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에 대구광역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 검토 중임.
- 그 동안 훈령에 근거하여 시행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사무소(이하 “군청 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달성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공무원
-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군수는 달성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 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5. 우수·효행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6.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7.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 관리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직원 사기 증진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개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달성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④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4인 이내 (여성공무원 1인 이상 포함)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인

⑤위원장은 필요시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09.08)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영은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공무원
5. 삭제 <2008.10.20>

③운영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8월 3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경제지원과)

3. 개정이유

- 지난 1.17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조례가 타 자치단체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기업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명령권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 (안 제13조의2 본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의 범위 이내”로 함.
(안 제13조의2 제1호)
- 나.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함.
(안 제13조의2 제2호)

5.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관내에 대형마트는 없으나, 기업형 슈퍼마켓 6개소와 조례의 위법성 및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소송 중에 있고, 법원으로부터 영업제한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 현재 영업 중에 있음.
※ SSM 현황 : 롯데슈퍼 서재점, 죽곡점, 가창점, GS슈퍼 죽곡점, 탑마트 현풍점, 홈플러스(주)익스프레스 화원점
- 영업제한정지 집행정지 사유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할 수 있다”를 조례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판단재량 포기”로 위법하며, 수권범위를 넘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반하므로 무효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합 11966 (2012.6.22)]
- 따라서 논쟁의 쟁점이 되고, 강제 규정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조례의 일부 항목 개정으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상인 보호 등 유통산업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를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2 제1호 중 “로 한다”를 “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13조의2 제2호 중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8월 30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제 정 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을 위해 주민만족도 평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대주민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함임.

4.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규정(안 제5조)

- 대상업체 : 군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 대상업무 : 청소행정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 보건·위생, 복지 등 공적서비스 책임성 포함

나. 대행업체 평가지침 작성 및 통보(안 제6조)

- 군수는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
- 평가지침에는 평가방향, 주민만족도 및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과 결과의 처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

다. 평가의 실시, 평가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군수는 대행기간내 연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 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 이의신청

라. 평가관련 조사 등을 위한 현장평가단 구성(안 제10조)

-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또는 단체로 현장평가단 구성
-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마.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17조 까지)

-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
 - 평가지침 및 계획수립,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인센티브, 계약해지, 대행구역축소 등에 관한 사항 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8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청소업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타 위원은 군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안 제19조)

- 대행업무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

5.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구광역시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표준안을
시달하여 자치법규로 제정·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통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조례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
이고 공정한 평가로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업체는
대행구역 축소 등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청소행정서비스 수준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청소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군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 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청소담당 공무원에 의한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를 전문기관 용역시행과 군에서 직접 시행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업체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폐기물관리법」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평가대상 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수립 시, 중앙 및 대구시 등 상급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청소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청소·환경 업무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 2. 군 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1명 이내
- 3.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 4.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③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군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군 소속 부서장 및 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업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 대상업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1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제19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⑤(생략)

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 역기관에 원가 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7.(생략)

⑦ ~ ⑧(생략)